

코로나19!



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

대국민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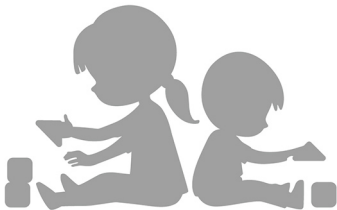
아동권리보장원

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

코로나19 로

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
 많아진 우리 아이들

**안전하게 보호되고
있을까요?**



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.
그중 가정 내 학대는 80% 이상...

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 1-3월 아동학대신고는
19년에 비해 500여건 이상 줄었습니다.

매년 이맘때면
어린이집, 학교를 통해
발견됐던 아동학대를
못 보게 된 것은
아닐까요?



[출처] 아동권리보장원 '20년 운영통계

바로 여러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

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(만 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이에 포함됨.

*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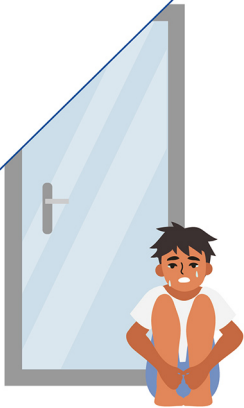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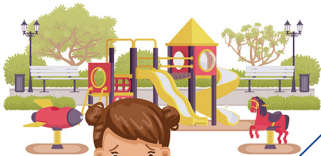
아동학대 발견하기

- 1 사회적 거리두기, 개인위생이 철저해야함에도
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계절에 맞지 않는 옷과
씻지 않은 모습으로 홀로 있는
아이를 본 적은 없으신가요?



- 2 이웃집 어딘가에서 고성과 욕설, 아이의
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?

3 공사장·유흥시설·차도 등에 아이 혼자
배회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?



4 훈육을 명목으로 집밖에 홀로 세워진 아이,
벌을 서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은 없으신가요?

아동학대 신고하기

- ☑ 아동학대는 '의심' 만 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.
- ☑ 신고 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(진술번복, 증거은폐 등 우려)
- ☑ 같은 상황을 계속 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

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!

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③항

아이들을 지키는 번호
아이지킴콜 **112!**

아이지킴콜112 앱 다운로드



iOS용



안드로이드용



아동권리보장원
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